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12월 12일

○ 회부일자 : 2003년 12월 12일

3. 제안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과 기능중심의 효율적인 기능·인력배분을 위하여
- 조직진단 및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기구와 소관사무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행정기구 기능 조정

- 기획관리실 「도정혁신기획단」 신설 (한시기구)
- 행정부지사 직속 「총무과」 → 자치행정국으로 이관
-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 기획관리실로 이관
- 농업기술원 「종자생산시험장」·「잠사균이시험장」
+ 종자보급소 → 「농산사업소」로 통합
- 축산위생연구소 + 내수면연구소 → 「축수산연구소」로 통합
- 여성회관 → 「여성발전센터」로 전환 및 기능 보강

○ 실·국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 조정

- 기획관리실장 : 정보통신, 도정혁신업무 추가
- 자치행정국장 : 총무업무 추가, 정보통신업무 삭제
- 농업기술원장 : 종자생산 및 감사군이 시험검사 삭제
- 건설종합본부장 : 하천업무 삭제
- 축수산연구소장 : 내수면시험연구 추가
- 농산사업소장 : 종자생산·보급 및 감사군이 시험검사 신설
- 여성발전센터소장 : 여성발전연구업무 신설

5. 검토의견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분권 및 도정혁신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과 기능 중심으로 기구를 일부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6조 제4호의 신설에 의거 조직관리업무와 제6조 제11호의 신설에 의거 정보통신과의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제6조 제12호의 신설에 의거 도정혁신기획단 기획관리실에 신설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신설에 의거 총무과의 업무를 자치행정국 으로 이관하고,

제7조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여론동향담당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10조 제13호 및 제23조·제24조의 개정, 제4장 제8절의 삭제에 따라

종자보급소 및 농업기술원의 종자생산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 업무를 통합하여,

개정안 제4장 제5절에 농정국 농산사업소로 통합하는 것과,

제35조 제1항의 개정과 제37조 제11호의 삭제로 건설종합본부의 하천관리업무를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본 조례 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의 개정과 제4장 제7절의 삭제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를

축수산연구소로 통합하고,

본 조례 제4장 제5절의 개정에 따라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평군의 출범에 따라 별표2의 중평소방서 위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개정안 부칙으로 금번 기구·직제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여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직진단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통된 의견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시킨 조례안이라고 보여지나,

금번 조직개편안의 기본방침과 중점 조정내용에 대하여는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구·직제 개편으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는 총무과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삭제하지 않는 점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 5. 27일 진천소방서 설치를 승인받았고, 도의회로부터 진천소방서 청사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제22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았으며, 2004년도 사업예산 확보하는 등 제반 여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진천소방서 설치 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